

## 국내 소액주주운동의 현황

하일호 변호사

### I. 들어가며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여 왔었다. 그 결과로 군부에 의한 정치지배를 종식하고 현재와 같은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군부에 의한 오랜 기간의 독재지배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개발이라는 명분과 결합하여 소수에 의한 자본지배와 힘의 논리에 의한 경제운용이라는 부정적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제 경제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와 힘의 논리를 배제하는 경제적 정의의 확립이라는 과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 글에서는 지난 5년여간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한 방편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었던 소액주주운동의 의미와 그 활동내용을 살펴보고, 필자가 직접 소액주주들과 함께 하였던 사례인 현대건설 및 대한통운의 사례를 소개하며, 끝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소액주주운동의 방향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 II. 소액주주운동의 의미

소액주주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주식의 소유자 중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체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증개시장에 등록된 회사의 주주들이다.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는 회사의 지배와 경영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더 나아가서는 경영자는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 욕구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외환유동성위기와 경제적 곤란에 대한 상당부분의 원인이 과거 정권과 결부된 자본집단의 부도덕성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고, 또한 독점과 부익부·빈익빈의 자체적 독소를 가지고 있는 자본영역에서 인간존엄을 위한 정의의 실현역 할은 상당부분 정치행정적 권력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로 공존하기 위한 코넥션을 가지고 있었던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서 소액주주에 의한 경영 감시활동은 기업활동의 건전성과 나아가 경제영역에서의 합리성을 회복하여 헌법적 가치인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 III. 연도별 활동내용

한국사회에 있어서 소액주주운동 또는 경제정의실현을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한 단체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sup>1)</sup>(이하 “경실련”이라 한다)과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위원회<sup>2)</sup>(이하 “참여연대”라 한다)를 들 수 있다. 이들 두 단체 중 소액주주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참여연대의 각 연도별 활동내역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 1. 1997년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은 199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7년의 활동을 중심적 테마별로 살펴본다.

##### 1-1.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

참여연대는 한보철강에 부실여신을 제공해 은행을 부실하게 한 제일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운동을 시작하였다. 참여연대는 거리 캠페인을 통해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을 규합하여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은행 경영진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었고, 주주들의 발언을 저지하며 정당한 표결 절차 없이 의결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sup>3)</sup>. 또한 제일은행의 경영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sup>4)5)</sup>.

##### 1-2.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확인소송

1997. 3. 24. 삼성전자는 600억원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이 450억원, 삼성물산이 150억원을 인수하도록 하였다<sup>6)</sup>. 이에 참여연대는 1997. 6. 24.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인터넷 사이트 : <http://www.ccej.or.kr>

2)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 : <http://www.pspd.or.kr/pec/index.html>

3) 97년 12월, 참여연대는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강행된 주주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하여, 그동안 요식절차로 전락되어온 주주총회 판행에 끼치기 를 박았다.

4) 당시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주식발행수의 0.5% 이상의 지분이 필요했다. 참여연대는 97년 6월, 제일은행 총주식의 0.5%가 약간 넘는 84만주를 가지고 이철수 전 행장 등 4명의 이사들을 상대로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5) 이 전 주주대표소송은 1심에서 참여연대와 소액주주들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주주대표소송은 국내 사법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고, 또 최근 부실경영을 한 기업주와 경영진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여 이철수 전 행장 등 4명의 피고들은 총 400억원의 손해액을 은행에 배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0. 1. 4. 재판부는 이철수 전 행장 등 피고 4인으로 하여금 10억원을 은행측에 배상하도록 하였다.

당시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은 1999. 6. 경 행하여었던 소액주주 지분 전량 소각조치로 인하여 소송이 각하될 상황이었으나, 은행측이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참여함에 따라 은행측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6) 사모는 공모와 달리 발행회사가 마음대로 특정인에게 채권을 인수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환가격이 발행일의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특정인에게 차액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고, 동시에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소액주주의 주주평등권인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의결권가치를 회복한 것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그리고 삼성물산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사채발행무효확인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이후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재판부는 1997. 9. 30.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삼성측은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버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997. 10. 7. 이재용과 삼성물산이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신주에 대하여 처분 및 상장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전환사채발행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신주발행무효확인청구의 소’로 변경했다.

참여연대의 삼성전자주식 처분금지가처분 및 상장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1997. 12. 17.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는 원고폐소판결을 받았다.

## 2. 1998년

### 2-1.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

정부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1998. 1. 경 부실이 심한 제일은행에 대해 8.2대1의 감자명령을 내렸고<sup>7)</sup>, 이에 참여연대는 경영에 참가할 아무 권한도 없는 소액주주들에게 경영감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감자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정부기관과 IMF에 공식서한을 보내는 한편, 제일은행 이사회에 감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감자의 실행을 막지는 못하였다.

### 2-2.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

1998년 들어 참여연대는 신문광고, 캠페인 등으로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을 규합, 본격적인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였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에 대하여 전환사채 발행 무효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중지,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정관개정 등 소액주주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고, 주주총회의 개최에 앞서 주주제안으로 정관개정안을 제출하였다<sup>8)</sup>.

또한 참여연대는 삼성자동차 부당지원 의혹과 중앙일보와의 내부거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삼성전자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삼성전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는 상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리를 묵살한 것으로 1998. 6. 12. 수원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부과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총수인 이건희씨와 삼성전자 대표이사 이윤우, 윤종용씨를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혐의로 4월 2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하였다<sup>9)</sup>.

7) 이 건 감자명령으로 인하여 정부는 제일은행의 총지분 중 94%에 달하는 절대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8) 1998. 3. 27. 개최된 주주총회는 13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고,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Pan-Pacific이라는 해외법인을 통해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에 위장출자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였고 전환사채 발행 및 중앙일보와의 내부거래 등에 대해 추궁하였다.

9) 당시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사회를 개최한 듯 이사회 의사록을 꾸몄다. 이같은 사실은 참여연대가 이사회 의사록에 출석이사로 기명날인되어 있는 이사들 중 일부가 회의

한편, 참여연대는 삼성자동차의 주요주주들인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가 1997. 1. 30. 아일랜드 소재 Pan-Pacific Industrial Investments사와 더불어 삼성자동차에 미화 280,200,000달러 상당의 2500억원을 신규출자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 및 삼성자동차와 각 회사 대표이사들을 외자도입법과 외국환관리법,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6월 1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sup>10)</sup>.

이 외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 점을 발견하고 증권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여 삼성전자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주의'조치를 받도록 하였다<sup>11)</sup>.

### 2-3. SK텔레콤 소액주주운동

1997. 12. 23.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주)에게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은 과다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고가로 장비 등을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선경그룹 회장인 최종현 자신이 94.6%의 절대지분을 갖고 있는 선경유통(주)와 자신의 장남인 최태원씨와 사위 김준일씨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텔레콤(주)에 막대한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식서한을 보내고, 신문광고를 게재하며, 기관투자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주주들을 적극 규합하여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SK텔레콤은 주주총회 직전인 1998. 3. 26. 소액주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을 참여연대에 전달해왔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식 사과와 소액주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정관개정,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 이루어졌다.

### 2-4. 5대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 10주 갖기 운동'

참여연대는 98년 하반기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10주 갖기 운동'을 전개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소액주주운동의 성과를 다른 5대 재벌기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 대우, 현대중공업, LG반도체 등을 추가하였다. 기존 주주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5개 기업 주식을 10주씩 구입하여 참여하도록 한 국민 10주 갖기 운동에는 시민의 힘으로 재벌을 개혁하자는 취지에 공감한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

일자에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밝혀낸 것이다.

10) 이 계약은 형식상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직접투자와는 달리 확정된 수의율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자동차가 그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와의 공모하에 상업차관을 도입한 것이다. 당시 한국법으로는 상업차관 도입은 외자도입법과 외국환관리법상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사안인 바, 합법적인 상업차관도입이 불가능하자 직접투자를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상업차관을 도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측은 상업차관임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한 채 외자도입신고를 하고 주요 사항들은 이면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외자도입법과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중요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시토록 규정한 증권거래법도 위반하였다.

11) 삼성전자(주)와 삼일회계법인은 제29기 결산기('97.1.1-12.31)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주석사항으로 기재해야 할 삼성자동차 주식 옵션거래 내용을 누락시키고, 외화자산·부채의 내용 및 외화환산 손익 중 일부 내용, 종업원대여금 내역 등을 기재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되었다.

### 3. 1999년

#### 3-1. 5대 재벌 주주총회 참가

참여연대는 1999. 1. 경 삼성전자, SK텔레콤, (주)대우, 현대중공업, LG반도체 등 5개 기업에 대한 소액주주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주주총회 참가를 선언하였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3월 20일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여연대의 주총 참가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참여연대는 LG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 주주총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각 사별 주주총회에서의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삼성전자 주주총회

참여연대는 주주총회에 앞서 정관개정안을 주주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가 제안한 정관개정안과 회사측의 정관개정안이 맞붙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계열사 지원자금 회수 및 책임자 문책, 계열사 부당지원 금지, 집중투표제 도입,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관개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표대결에서 패배하여 결국 회사측의 안대로 통과되었다.

##### (2) SK 텔레콤 주주총회

SK텔레콤은 소액주주 요구사항 중에서 감사위원회 도입은 수용하였으나,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권유를 통해 국내외 주주들의 지분을 규합하였다. 참여연대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경영진에게 경영상의 문제점을 질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하는 정관개정을 막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벌였으나 찬성 75%, 반대 25%로 패배하였다.

##### (3)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현대중공업은 소액주주 요구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여 현대자동차의 기아·아시아자동차 인수자금 지원계획을 철회하였다.

##### (4) 대우 주주총회

참여연대는 주주총회에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였으며, 주주총회 이후 소액주주 20명을 모아 (주)대우 김우중 회장을 상대로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손해액 23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 3-2. 현대전자 추가조작 사건

1999. 4. 8. 금융감독원은 현대그룹이 98년 5월부터 11월까지 현대상선과 현대중공업의 자금 수천억원을 동원하여 현대증권을 통해 시세조종주문을 내어 현대전자 주가를 3배 가까이 끌어올린 사실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기간동안 정주영씨 일가와 현대계열사들은 보유중이던 현대전자 주식을 처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현대상선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만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을 뿐, 정씨 일가와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씨 일가와 주가조작 창구였던 현대증권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현대증권을 상대로 불거래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정주영씨 및 정씨 일가 2세 경영인들과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현대전자 주가조작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현대전자 주주들을 규합하여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과 이익치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sup>12)</sup>.

### 3-3. 제일은행 소액주주 지분 무상소각

정부가 다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보유 주식은 병합하여 지분을 남겨두고 제일은행 소액주주 지분 무상소각을 결정함에 따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자본금 감소 명령처분 일부 취소 청구소송 및 자본금 감소 명령처분 일부 효력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일은행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일부 효력정지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3-4. SK텔레콤 임시주주총회

1999. 6. 경 SK텔레콤이 30%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를 결의하자, 참여연대는 유상증자 실시가 자금 확보 목적이 아니라 SK그룹의 지분 늘리기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SK텔레콤은 이를 강행하였다. 이에 사외이사, 사외감사, 주주들이 강력히 반발하여 8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유상증자 문제로 인한 손길승 이사 해임과 주식 액면분할, 그리고 참여연대가 주주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등이었고, 참여연대는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아 참석하였다. 그러나, 주총 직전 SK상사와 (주)SK가 타이거 펍드로부터 SK텔레콤 주식을 대거 사들여 SK텔레콤은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고, 참여연대는 최대 49%까지 이르는 지지를 확보하였으나, 결국 모두 회사측 안대로 통과되었다.

### 3-5. 삼성의 변칙증여

1999. 2. 경 삼성SDS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230억 원 어치를 발행하여 이전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을 비롯한 자녀 4명과 삼성임원 2명 등 특수관계인 6인에게 매각하였다. SDS는 상장이 예정된 기업으로 주식 실거래가격이 15만 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재용 등에게 매각한 BW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주당 7,150 원으로 정해놓고 있어, 인수자들에게 엄청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BW의 발행이 그동안 비상장 우량계열사의 주식이나 CB를 인수시켜 상장 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거나 적은 돈으로 지분을 늘려온 삼성그룹의 3세 승계 작전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하였다. 참여연대는 BW의 부당한 저가

12) 검찰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현대증권이 주가조작을 주도, 1,5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정씨 일가에 대한 수사의지도 표명하였으나, 현대측의 로비설과 정치권의 개입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 사건의 최종책임자는 이익치 회장이라고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발행을 결의한 책임을 물어 김홍기 대표이사와 이학수 감사를 배임죄로 고소하고, 이재용 등 인수자와 삼성SDS를 상대로 BW 처분 금지 및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다<sup>13)</sup>.

## 4. 2000년

### 4-1. 데이콤의 기업지배구조개선

참여연대가 데이콤을 소액주주운동 대상기업으로 포함한 후 데이콤은 참여연대가 제안한 경영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수용하였다. 참여연대와 데이콤이 합의한 안은 데이콤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를 50% 이상 선임하고, 이사회의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다는 것, 감사위원회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계열사간 출자 및 내부거래 시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합의안은 3월에 열린 데이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되었다.

### 4-2. 현대투신 불법자금운용실태 발표와 손해배상소송제기

참여연대는 2000. 4. 24. 현대투신의 불법적인 자금운용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현대투신이 교묘한 방법으로 고객의 재산을 축낸 사실을 발표하였다<sup>14)</sup>. 바이코리아 펀드를 운용하는 현대투신운용이 펀드자산의 5%까지 다른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계열사인 현대투신증권이 보유하던 부실채권을 모아 부실채권상각전용펀드(일명 Bad Fund)를 조성한 후 여기서 발행한 불량 수익증권을 바이코리아 펀드에 고객 몰래 편입하였다가 이를 상각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참여연대는 현대투신운용과 현대투신증권 등에 대해 바이코리아 펀드의 불법운용실태를 전면공개하고 손해입은 투자자들에게 보상할 것 등을 요구하였는데, 회사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2000. 8. 7. 18명의 투자자들을 모아 현대투신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 4-3. 4대그룹 실권주 배정실태 발표

2000. 8. 경 참여연대는 당시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송자 전 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시절 4차례에 걸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실권주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송자 전 장관이 자기 돈이 아닌 회사의 돈으로 실권주를 인수하여 대규모 시세차익을 얻는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송자 전 장관의 경우를 계기로 4대그룹의 실권주 배정실태를 조사하여 2000.

13) 2000. 5. 9. 서울고등법원은 신주인수권 행사 등 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재판의 결과 BW인수자들인 이재용씨를 비롯한 이전희 회장의 자녀들과 삼성의 임원들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14)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현대투신의 바이코리아 펀드중 대표적인 펀드인 르네상스 1호 펀드와 나폴레옹 1호 펀드의 각종 장부를 열람하여, 각 1345억원과 217억원의 불량 유가증권을 고객재산에 편입하여, 고객들에게 223억원 및 67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을 밝혔다.

11. 1. '4대그룹 상장계열회사 실권주 배정실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에서 참여연대는 4대그룹이 총 105회의 유상증자 중 48%를 특정인에게 배정한 사실과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실권주를 임원들에게 배정한 비율이 92.5%에나 이르고 그들이 얻은 시세차익이 총 457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sup>15)</sup>.

#### 4-4.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입법운동

참여연대는 2000. 10. 16.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상법개정 입법청원'과 '증권관련집단 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sup>16)</sup>.

이러한 입법운동을 위해 참여연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촉구 서명운동' 인터넷 사이트(<http://cleanstock.or.kr>)를 개설하여 사이버 서명을 받았는데 서명사이트를 개설한지 40여일 만에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재경부와 법무부 등에 항의메일 보내기 등의 사이버 캠페인도 벌였다. 또 국회의원과 경제, 경영, 법학 교수, 그리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서명운동도 전개하여 1천명이 넘는 전문가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 IV. 현대건설 및 대한통운의 사례

필자는 인터넷을 통한 소액주주활동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회사와 채권단측의 갑자안에 반대하고 있던 현대건설 소액주주 모임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당시 현대건설 소액주주는 "현대건설 소액주주 권리찾기 투쟁위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을 도와 줄 적당한 법률가를 찾지 못하였다. 이 후 필자는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고 정리계획안의 작성하고 있던 대한통운의 소액주주들과도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이는 필자가 활동하고 있던 참여연대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평소 필자가 생각하고 있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 준 사건이기도 하였다.

#### 1. 현대건설 소액주주운동

현대건설은 2000년 회계감사결과 거액의 손실로 인한 자본전액 잠식상태가 되었고, 이에 현대건설의 채권단은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감자하고 채권의 출자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당시 소액주주들은 현대건설의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아무런 예

15) 실권주는 주식을 인수하는 시점에 이미 시세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수자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다. 기존 주주들에게는 지분이 회석화 되는 손해를 끼치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권주를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자기 자신에게 배정토록 하는 것은 자신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사회와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91조 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16) 참여연대는 상법 제382조의 2 '집중투표제'의 단서조항(정관배제조항)을 삭제해 주주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는 법률개정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집중투표제는 98년 11월 도입될 당시 기업들이 집중투표제를 거부할 단서조항을 둘으로써 2000년 현재 어떤 기업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제도도입과 동시에 사문화된 제도였다.

측도 하고 있지 못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되었고, 소액주주들은 인터넷의 증권관련사이트를 통하여 자생적으로 자신들의 울분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소액주주모임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지만, 법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다가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고 필자와 만나게 되었었다.

현대건설과 채권단은 2001. 4. 20. 자신들이 제기한 감자안이 증권거래법상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이고, 증권예탁원의 shadow voting<sup>17)</sup> 조차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현대건설이 창업자인 정주영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가지고 있던 주식을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sup>18)</sup>.

필자는 우선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고<sup>19)</sup>,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신문광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각 언론사에 조직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주주총회에서 관철하기 위하여 의결권위임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약 800만주에 달하는 의결권을 위임받게 되었다<sup>20)</sup>. 하지만, 주주총회 당일 소액주주들은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채권단측에 패배하였다. 당시 현대건설측은 소액주주들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면서 자사의 직원들을 주주라는 명분으로 먼저 회의장에 입장시켜 회의장의 앞부분 전부와 나머지 대부분의 장소를 점거하였고, 의사진행발언을 구하는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었다. 이로 인하여 뒤늦게 도착한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은 뒤편 또는 회의장의 옆면 복도에 선 채로 회의에 참여하였었고, 1호 안건인 정관변경의 건이 통과되기 까지는 2시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었다.<sup>21)</sup>

한편, 소액주주들은 현대건설의 전임이사 6명과 외환은행 및 산업은행의 총재를 자사주 무상양도의 건과 관련하여 배임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sup>22)</sup>, 주주총회와 관련하여서는 주총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17) shadow voting이란 증권예탁원이 자신에게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 당해 실질주주의 반대 또는 의결권의 행사가 없는 경우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의결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찬반의 비율대로 예탁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18) 당시 양도한 주식 수는 50,622,193주로서 외환은행에 41,022,193주를, 산업은행에 9,600,0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이는 총 발행주식의 15.76%에 달하는 양이었으며, 이전에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은 현대건설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19)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고, 2001. 5. 18. 현대건설의 임시주주총회가 종료한 이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다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20) 당시 소액주주들은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매일 10여명의 인원으로 16만명에 달하는 주주명부를 직접 복사하고, 우편으로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하였다.

21) 당시의 표결상황을 살펴보면, 실제 참석한 총 주식수 4,079,655주 중 1호 안건에 대하여는 찬성 1,171,626주, 반대 2,008,494주로서 반대하는 주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에 무상으로 양도한 주식이 의결에 참여한 상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결의되었었고, 이에 실망하고 장시간 선 채로 있어 피곤에 지친 소액주주들은 하나 둘씩 회의장을 떠나게 되었었다.

22) 현대건설이 채권단에 무상으로 양도한 주식의 양도당일 종가로 계산한 가치는 금 33,157,536,415원에 달하는 것으로 당시 현대건설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이는 대단히 중요한 회사자산이었었다.

## 2. 대한통운 소액주주운동

대한통운의 경우는 회사 자체는 경영상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이었던 동아건설의 부실과 관련하여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법정관리신청이 된 상태였었다. 이후 회사정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의 지분에 대한 대규모 감자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소액주주들은 극력히 반대하였다. 대한통운의 경우는 이미 법정관리개시결정이 난 이후였고, 당시 회계실사결과 자본잠식상태였으므로 주주들은 법정관리절차와 관련하여 아무런 의결권이 없는 상태였다<sup>23)</sup>.

당시 대한통운의 주주들은 현대건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도와줄 전문가를 구하지 못하여 상당한 시일을 지체하였었고, 구체적인 소액주주 모임조차 결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필자는 우선 소액주주들의 모임을 결성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대한통운의 특수한 상태를 고려하여 회사경영진과의 대화 및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홍보하는 언론광고와 언론사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리계획안은 소액주주들의 지분에 대하여 6대1의 감자로 결론이 났다.

## 3. 문제점의 검토

필자가 두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직접 상황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경제적인 거시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구조조정이 결국 회사의 경영과 부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소액주주들의 회생을 발판으로 하여 채권은행들의 신용도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소액주주들의 대응방식과 관련하여 소액주주들의 대응이 산발적이며, 너무 늦다는 점 및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을 도와 줄만한 사회지도적 세력집단이 없었다는 점이다. 소액주주들의 모임의 경우는 사안의 확대와 여론화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심리적 두려움을 느껴 모임을 탈퇴하는 경우도 있었다. 언론의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보다는 인터넷 등에 기반을 둔 군소 언론들이, 국내언론보다는 Bloomberg 등 외국언론들이 더욱 관심이 높았었다. 특히 관련된 대부분의 집단들이 소액주주들의 이익 및 경제적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의 구현과 절차참여를 포함한 절차적 정의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점이 심히 적정스러운 것이었다.

현재 한국사회는 외환유동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와중에서 사회계층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심리적인 이반현상이 심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소시민인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구성원들의 동화적 구심력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3) 대한통운의 자본잠식과 관련하여서는 회계실사상의 계수에 대하여 다수의 의문이 존재하는 바, 우선 동아건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에 따른 구상권의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리비아 대수로공사의 계속진행에 대하여 논의가 계속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증부분을 전부 채무로 보고 평가하였다는 점 등이 의문으로 제기되었다.

## V. 소액주주운동의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

사회변화의 원동력이 엘리트집단의 리더십에 있는 것인지 또는 사회의 기층집단의 주동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나, 궁극적으로 사회변화는 그 이해관계 있는 기층세력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소액주주운동은 현재까지 사회엘리트계층의 주도와 소액주주들의 부분적 참가에 의한 방법에 의하였다. 물론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한 선도적 엘리트들의 희생에 의하여 기업문화의 정화에 큰 진보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결국 가장 큰 세력결집체는 자신의 이익이 첨예하게 관련된 각 회사의 소액주주집단이라고 할 것이고, 이들에 의한 변화모색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외환유동성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국가의 경제관여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과 정치영역에서의 운용자금이 사실상 기업집단으로부터 공급되어져 왔었다는 부정한 관행이 근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정치집단과 기업경영집단의 음성적 거래관계와 기업내부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타파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집단이 소액주주집단이라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소액주주운동의 경우, 일부 엘리트 집단에 의하여 주도되어 온 관계로 특정 소수의 회사에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분만을 다루는 것이 주 역할이었다는 점과 필자가 소액주주들과 직접 행동을 같이하며 느낀 문제점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결국 소액주주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의 결성과 소액주주운동의 방향 및 방법론을 정립하고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를 결성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 VI. 맷으며

이상에서 한국의 현실에서 소액주주운동이 가지는 의미와 그 운동역사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필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사고의 발달부분을 이야기하였다. 한국의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회복이나 외환보유고의 제고 등과 같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구성원들간의 동질성회복과 국가적 비전에 대한 공유의식의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이라고 생각한다.<sup>24)</sup>

24)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kan@hilawyers.com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